

한가족데이케어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

I.(계약 및 목적) 본 사항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,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II.본 센터와의 계약 시에는 이용계약서(서약)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- 1) 대상자관리 및 서비스지원, 변경기록지
- 2) 입소(이용)자의 권리
- 3)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
- 4) 전염성 질환 및 공격적 행동 등에 따른 격리 및 신체구속동의서
- 5) 기타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서류

1.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이용자 본인이 치매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.

2.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, 제출하여야 한다.

- 1) 장기요양인정서 사본1부.
- 2)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1부.
- 3) 기타 센터에서 필요한 해당서류 각1부(주민등록 등본 1부, 건강진단서 1부, 치매진단서(해당자)1부, 수급자 증명서(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해당)1부)

III.(계약기간) 본 센터의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.

- 1)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. 단,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내로 한다.
- 2) 아래의 퇴소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 기간은 변경 될 수 있다.
 - 이용대상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 시
 -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 신청 시: 이사, 해외이민, 보호자 변경 등
 - 기관의 퇴소판정에 의한 경우: 전염성 질환, 증상악화로 인한 소란 행위 등 타 이용대상자에게 현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등

IV.(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)

1.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)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
 - 2)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, 단 해약 통지서는 해약일로부터 최소7일 전에 하여야 한다.
 - 3) 이용자가 사망한 때
 - 4) 이용자가 3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
 - 5)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
 - 6)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직원에 대하여 정신적,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
 - 7)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
- 2.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서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.
- 3.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

4.이용대상자의 타 지역이주로 인한 경우, 센터는 보호자에게 이용대상자의 현재 상태 및 증상, 센터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, 보호자 요청 시 이주 지역의 시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V.(계약의 정지) 이용자가 3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시설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.

VI.(이용료)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하며,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납부한다.

1. 이용료는 공단청구 금액의 15%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경감대상자는 9%, 6%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.
2.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비 급여 항목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.
 - 식재료비 : 일식 4,000원 - 간식비 : 일 1,000원
3. 등급외자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5등급 수가 산정에 기준에 따른다.
4.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전액 부담 한다.
5. 이용료는 익월 10일 전까지 납부 하도록 한다.
6. 이용료의 납부는 계좌입금으로 한다. 단,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.

VII.(이용대상자) 센터의 이용대상자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법 상의 이용기준에 의거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.

1. 노인보건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1~5등급 및 등급 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.
2. 등급 외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자 및 만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저소득자, 독거노인 등으로 한다.

VIII.(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)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.

1)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① 수급자의 안전한 활동여건 조성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, 표준요양급여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.
- ② 계약자는 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간담회, 가족행사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고, 서비스의 질을 평가 할 수 있음.

2) 신원인수인의 의무

-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-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
- ③ 인적사항 및 거주지, 장기요양보험 관련 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
- ④ 장기여행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